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의 범위와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안 제26조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의 재난을 말함

- 다.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4 신설)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5(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재난의 범위)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난을 말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한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경우의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제26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년도분)**

(1쪽)

기금법인	① 기금법인명		② 인가번호	
	③ 설립등기일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회계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체	⑦ 대표자		⑧ 업종	
	⑨ 근로자 수(명)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명)	
	⑪ 납입자본금(천원)			
기본재산 현황 (천원)	⑫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			
	당기 변동 금액	증가	⑬ 사업주 출연	⑭ 수익금·이월금 전입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	⑯ 기금법인 합병
		감소	⑰ 기본재산 사용	⑱ 기금법인 분할 등
			⑲ 소계	
	⑳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			
기금 운용 및 관리 (천원)	운용방법	㉑ 금융회사 예입·예탁	㉒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㉓ 유가증권 매입	㉔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㉕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㉖ 기타	
	㉗ 근로자 대부			
	㉘ 합계			
	기금사업 재원 (천원)	㉙ 당기 기금운용 수익금		
㉚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범위				
㉛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				
㉜ 기본재산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				
㉝ 이월금 등				
㉞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조(수혜범위 확대 기준의 적용례)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할 금액을 정한 후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앞으로 사용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본재산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㉕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40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㉖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41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
	㉗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		
	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㉙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사업 실적 (천원, 명)	구분	계		목적사업		대부사업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금액	수혜자수	
	복지 사업 비	㉔ 주택구입·임차자금						
		㉕ 우리사주 구입자금						
		㉖ 생활안정자금						
		㉗ 장학금						
		㉘ 재난구호금						
		㉙ 체육·문화활동 지원						
		㉚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비용 지원						
		㉛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㉝ 그 밖의 복지비								
㉞ 소계								
㉟ 기금 운영비								
㊱ 잔액								
㊲ 합계								

선택적 복지비 (천원, 명)	㉟ 금액	㉠ 수혜자수

부동산 현황 (천원)	㉟ 명칭	㊱ 금액	㊲ 취득일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또는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법인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년도분)란 기금법인의 회계연도의 말일이나 포함된 연도를 적습니다.
2. ⑥ 회계연도란에는 기금법인의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말일을 적습니다.
3. ⑧ 업무총량에는 「특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표부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협력업체 근로자」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1. ⑪ 납입자본금란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조합·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12. ⑫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기금의 전기 회계연도 말일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당기 변동총액란(⑬ ~ ⑮)은 해당 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14. ⑯ 사업주 총액란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한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15. ⑰ 수익금·이월금 전입란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 결산 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⑱ 사업주 외의 자 총액란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7. ⑲ 기금법인 합병란에는 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 증가액을 적습니다.
18. ⑳ 기본재산 사용란에는 ㉠부터 ㉣까지를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 기금법인 분할 등란에는 기금법인 분할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액을 적습니다.
20. ㉥ 소계란에는 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을 합한 금액을 뺀 [(㉠+㉡+㉢+㉤)-(㉦+㉧)] 금액을 적습니다.
21. ㉨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과 소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2. 기금 운용 및 관리란(㉨ ~ ㉮)에는 ㉨의 기본재산이 운용 또는 대부분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 근로자 대부분에는 기본재산에서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대부분되어 있는 전체 금액(누계 금액)을 적습니다.
- － 예를 들면, 전기 말까지 30명에게 1억원이 대부분으로 쓰이고 있고, 해당 연도에 1천만원을 1명에게 대부분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업에게 1천만원을 대부분한 경우에도, 총 대부분금액은 1억1천만원으로 적습니다. 이하 제32호에서도 같으며, 이 경우 수혜자 수는 32명으로 적습니다)
24. 기금사업 재원란(㉮~㉳)에는 기금사업(㉮) 근로자 대부분은 제외합니다)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원을 적습니다.
- － ㉮과 ㉯의 합계액은 ㉮과 일치해야 합니다.
25. ㉴ 당기 기금운용 수익금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금의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6.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범위내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해당 회계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의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회의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7. ㉶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란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8. ㉷ 해당 사업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내에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회의가 5년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복지기금협회의가 사용하지로 결정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운영명상 보고 시 ㉷ 이월금 등란에 기재하지 않고 ㉸ 기본재산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내에 남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9. ㉸ 이월금 등란에는 전기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30. ㉹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회의가 사용하지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1.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 중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2. ㉻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에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3. ㉼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4. ㉽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5.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업 현황란(㉿ ~ ㊱)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6. ㊲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37. ㊳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에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8. 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란에는 ㊴ 중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9. 복지사립비(㊵ ~ ㊷)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의 사업 실적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이용한 근로자 대부(㊷)를 포함합니다.
40. ㊸ 기금 운영비란에는 복지사립 외에 기금 운용과 관련한 지출비용을 적되, 수혜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41. ㊹ 잔액란에는 남아 있는 목적사업 재원으로, ㉮과 ㉯의 합계액에서 ㉮부터 ㉣까지의 합계액(㉮)과 ㉯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2. 선택적 복지비란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선택 복지제도로 운영한 경우 사용한 금액(㉦)과 수혜자수(㉽)를 ㉿ ~ ㊱에 해당하는 복지사립비 중 그 운영실적(총액과 수혜자 수 합계)을 적습니다.
- ※ 선택적 복지제도는 실적이 ㉿ ~ ㊱에 해당하는 복지사립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100명에게 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에는 1천만원, 100명을 기재하고 ㉽에는 1천만원, 100명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3. 부동산 현황란에는 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적습니다.
- － 금액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출원받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당시의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 취득일은 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수해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의2(수해범위 확대의 기준)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해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해금액의 <u>100분의 25</u>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 ----- ----- ----- ----- 100분의 25(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신 설>	제26조의3(재난의 범위)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난을 말한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한

<신 설>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경우의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제26조의4(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

	<u>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 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 상 증가한 경우</u> <u>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 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 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 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 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u> <u>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 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 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u> <u>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 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 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u>
--	--